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허 정  
전화 031-732-1678 / 팩스 031-739-4621

**보도자료**  
2020. 3. 12.(목)

### 제 목

**A○○장학회 운영 관련 前 국가정보원장 김민복 불구속 기소**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※ 위 양식에 따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공개의 요건과 범위 기재(제15조 제4항)

※ 해당 부분에  표기, 해당사항 없는 부분()은 내용 삭제

□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2020. 3. 12.(목) 공익법인 A○○장학회 재산 8억 8,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과 관련하여 前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□ 피고인 및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김만복(73세, 前 국가정보원장) 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횡령)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, 위계공무집행방해

□ 수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B교육지원청은 주무관청 허가없이 A○○장학회 기본재산을 임의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, 검찰 보완수사 결과 횡령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

□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횡령),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
  - 2016. 4. 11.경부터 12. 19.경까지 주무관청 허가 없이 공익법인 A○○장학회 재산 합계 8억 8,800만 원(기본재산 8억 3,000만 원)을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의사용
2.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
  - 2017. 9. 6. B교육지원청에 2016년도 공익법인 A○○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 거짓 보고
3. 위계공무집행방해
  - 2017. 9. 14. 허위 차용증 등 제출하여 B교육지원청 감독업무 방해

□ 주무관청인 B교육지원청에 수사결과 통보하여 관련 행정절차 진행 하도록 할 예정 ☒